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귀하

인 적 사 항	계 약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체명		공제계약번호	
	주 소			
	휴대번호		E-mail	

기대출액	금	원	미납이자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	---	---------	---

※기존 대출에 추가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미납이자가 없어야 합니다.

대 출 신 청 및 약 정	대출종류	<input type="checkbox"/> 일반대출	<input type="checkbox"/> 의료대출	<input type="checkbox"/> 재해대출
	신청/약정금액	금 원 ( W )		
	대출이자율	% ※일반대출은 매 분기별 기준이율과 연동하여 이율변동		
	대출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대출의 총한도는 납부부금 합계액과 임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90%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일반대출의 한도는 대출 총한도와 동일하며, 대출 총한도내에서 의료대출은 최대 1천만원, 재해대출은 “재해확인서”상의 피해금액과 2천만원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신청가능합니다.  
 ※기존 일반대출을 재해·의료대출로 전환하거나 전환후 한도범위내 추가 신청, 또는 일반대출을 추가 신청할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대출신청은 10만원 단위로 하며 대출한도에서 기 대출받은 총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의료 및 재해대출은 잔액기준내 최대한도내에서 추가 증빙서류 제출시 추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대출은 인터넷(www.8899.or.kr), 콜센터(1666-9988), 모바일 앱, 방문(본부 및 지역본부)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의료 및 재해대출은 방문(본부 및 지역본부) 및 우편을 통해서만 신청가능하며, 우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원본)의 수취후 검토·심사 등을 거쳐 대출이 진행됩니다.

대출총합계	금	원 ( W )
-------	---	---------

약 정 서	<p>제1조(대출신청자격)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계약자가 공제계약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금납부를 미납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p> <p>제2조(대출기간) 대출기간(대출실행일의 다음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은 일반대출은 1년, 의료대출은 1년, 재해대출은 2년으로 하며, 기간내에 대출금이 상환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1년 단위로 대출기간이 연장됩니다.</p> <p>제3조(상환방법) 대출원리금은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p> <p>제4조(대출이자) ①일반대출의 대출이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대출일자(이하 “이자납부일”이라 한다)에 납입하는 것으로 하며, 대출일이 해당한 월의 다음 월부터 최초 납입합니다.</p> <p>②이자납부일이 경과하여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납이자를 대출원금에 합산하고 그 합산된 금액에 대하여 상기의 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p> <p>③미납이자가 있는 경우 이자납부일마다 재청구합니다.</p> <p>④대출시행후 대출이자율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납부합니다.</p> <p>⑤대출이자의 계산방법 및 이자율 등은 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출이율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공제소개-기준이율공시-대출이율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p> <p>⑥의료대출과 재해대출의 대출이자는 최초 대출기간 동안은 무이자로 하며, 최초 대출기간내 미상환시 연장시점부터는 일반대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p>
-------------	---

